

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
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	산업통상부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에 대한 위임체계를 정비하고, 상위법령 개정으로 근거가 소멸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 체계상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위임근거 조항을 신설함. (안 제2조제1항)
- 나. 상위법령 개정으로 근거가 소멸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실무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조항을 삭제함.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중
- 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산업통상부령 제 호

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“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”을 “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가목의”를 “가목 및 다목의”로 하고, “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”을 “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사항의 기준”으로 한다.

제4조는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 여 <u>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</u> (이하 “에너지소비효율기준”이라 한다) 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·배 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.	제2조(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<u>세부사항의 기준</u>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가목 및 다목의</u> ---- ---- <u>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</u> <u>세부사항의 기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 제4조(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 <u>회의 위촉위원</u>) 「환경친화적자 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2항제2 <u>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</u> <u>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은</u> <u>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</u> <u>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중</u> <u>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.</u>	②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